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751
----------	-------

제안연월일 : 2012. 5. 2.

제안자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전체회의 상정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1752호	강명순 의원	2008.11.5	제303회 국회(정기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11.11.18)
	제1805491호	유재중 의원	2009.7.17	
	제1805643호	임두성 의원	2009.7.31	
	제1805758호	오제세 의원	2009.8.25	
	제1806746호	전현희 의원	2009.11.27	
	제1807483호	임영호 의원	2010.1.28	
	제1807510호	전현희 의원	2010.1.29	
	제1810955호	오제세 의원	2011.2.28	
	제1812109호	신상진 의원	2011.6.1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제304회 국회(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11. 1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한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
으로 격상함. (안 제23조)

4. 부대의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원장”을 “제5항의 간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차관”을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생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현행 본문과 같음)
<u><신 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 ----- -----<u>대통령</u>-----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u>위원장이</u> 부의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위원장은 <u>보건복지부장관</u>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차관</u> 2. (생략) <u><신설></u> ⑤ (생략)	② ----- -----. 1.~5. (현행과 같음) 6. ----- -----<u>제5항의 간사위원</u>-----. ③ (현행과 같음) ④ -----<u>대통령이</u>----- -----. 1. ----- -----<u>장</u> 2. (현행과 같음) ⑤ <u>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